

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(등기)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9. 4.

경기도 오산시 세마동장

- 1. 공 고 명: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
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: 2026. 9. 7. ~ 2025. 9. 21.(14일간)
- 3. 공시송달 대상

대 상 자		장애 유형	반송일	반송사유
성 명	주 소			
송**	경기도 오산시 세마문학로 50, 11*동 1***호 (지곶동)	지체 (척추)	2026. 9. 4.(등기우편)	폐문부재

- 4.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 - 5.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
 - 가. 제 출 처: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행정복지센터
 - 나. 제출기한: 2026년 9월 21일까지 (재판정 재진단기한)
 - 다. 주 소: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419
 - 라. 문의사항: 031-8036-6559
 - 마. 구비서류: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, 검사결과지, 진료기록지
- ※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6. 유의사항: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,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안내드립니다.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청문 실시일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